Contents

국내 입법 동향

국외 입법 동향

인터넷 법제동향

•• 국내 입법 동향 ••

1. 입법동향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 3)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산업은 ICT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미래 ICT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평가 받고 있음.

– 제정안은 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및 시책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제20조)

-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다른 법령에서 인 · 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1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 · 성능과 그 적정 수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 등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4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7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5. 3. 9)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그 이용은 엄격하게 제한됨. 현행법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강학상의 해석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을 지우거나 다른 변수로 대체시키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가공한 경우에는 그것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함.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이에 관한 행정규칙인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음

-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비식별화 조치의 기술적 미비나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반복하다 보면 우발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명확한 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는 실정임

- 특히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통해 '산업 활성화'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안착에도 기여할 것임

주요내용

- 비식별화 방법을 이용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4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3. 6)

소관 상임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에 규정만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어 오히려 행정편의상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의 수가 현재 1,000여개에 이르고 있음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 ·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법률 등의 현황을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 · 통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3. 5)

소관 상임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 및 통계기법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집 ·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과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www.kbig.kr)를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와는 달리 빅데이터의 분석 ·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률 근거가 미약하여 고품질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빅데이터의 분석 ·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에 빅데이터의 분석 ·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빅데이터의 분석 ·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학술연구,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하거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3. 5)

소관 상임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 최근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비식별 조치'를 하여 이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데이터의 결합·융합으로 인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형성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식별 개인정보의 안전성 검증 및 그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비식별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 조치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제15호 및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제47조의3)

※ 출처 : 국회 (http://www.assembly.go.kr)

•• 국외 입법 동향 ••

1. 입법 동향

1 캐나다의회, 「반테러리즘법안 (2015)」검토 (2015.1.30)

개요

■ 캐나다 의회에 「반테러법안」("An Act to enact the Security of Canada Information Sharing Act and the Secure Air Travel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and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법안번호 Bill C-51)이 제출되었다(2015.1.30).

배경

■ 최근 캐나다는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따르는 과격 지하디즘(jihadism)과 같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여러 사고 및 2006년 CN 타워 폭파 시도, 2013년 Via Rail 탈선 계획 등으로 테러의 위협에 직면해왔다.

– 이러한 사건들은 캐나다 입법자들로 하여금 테러리즘에 대처할 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게 만들었다.

주요 내용

■ **(목적)** 반테러리즘 법안의 목적은 캐나다의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부터 캐나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캐나다 정부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권장하고 촉진하는데 있다(제3조).

– 그러나 정부 기관간의 정보 공개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제5조(1)항).

■ **(특징)**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동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캐나다 안보 정보 공유법(Security of Canada Information Sharing Act)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있다(제1장).

– 캐나다 안보 정보공유법의 규정들은 캐나다 연방정부 기관들로 하여금 캐나다의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관할권 혹은 책임을 가지는 그 밖의 연방정부 기관에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승인하고 있다(제5조).

■ 캐나다의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는 다음을 의미한다(제2조).

– 무력 혹은 적법하지 않은 수단으로 캐나다에 소재중인 타국 정부를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끼치는 행위

– 간첩, 첩보행위, 테러행위, 핵, 화학, 방사능 및 생물학적 무기의 확산

– 테러리즘

– 주요 기간시설에 대항 방해 행위 등 캐나다의 주권, 안보 혹은 영토적 완전성, 외교적 혹은 영사적 관계의 저해

– 경제적 ·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 어느 개인 혹은 그 개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행위로, 그러한 행위의 이유가 해당 개인이 캐나다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 캐나다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나라의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

평가

■ 법안의 의도와는 달리 캐나다 내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 정부 기관의 정보공개는 정보의 공개 금지 혹은 제한을 규정하는 다른 법에 따라야 한다. 즉, 사생활보호법(the Privacy Act) 제8조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정보는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개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항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의하여 공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반테러리즘 법안은 위 사생활보호법과는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에서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반테러리즘 법안은 캐나다 형법 등 기존의 법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개정

제안된 형법의 문안은 경찰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will be carried out)'가 아닌 발생될 수 있는 경우(may be carried out) 해당 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테러리즘을 제압하고자 하는 동 법안에 의하여 범죄 및 수감자의 수만 늘어날 뿐이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Daniel Therrien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시 반테러리즘 법안에 대하여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Therrien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위 법안으로 인하여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아닌 캐나다의 일반 시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 또한 캐나다 내에서 전반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세 군데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새로 도입되는 법안에 따르면 이 외 다른 기관들이 모두 불필요하게 국가안보 감시체제에 개입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관의 관할권 확장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핀란드, 정보사회 관련 규제를 통합하는 「정보사회법 (2015)」 (Information Society Code 2015) 발효 (2015.1.1)

개요

■ 지난 2014년 11월 7일 핀란드 의회에서 승인된 「정보사회법(2015)」(Information Society Code 2015)이 발효되었다(2015.1.1.).

목적

■ **(목적)** 「정보사회법(2015)」은 기존 법에 산재되어 있던 중복 규정들을 제거하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법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기존에 존재하던 10개의 법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490조에 달하던 조항은 350개로 축소하였다.

정보사회 관련 규제 법령

① 통신시장법(Communications Market Act),

②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Act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③ 도메인이름법(Domain Name Act)

④ 라디오주파수 및 전기통신장비에 관한 법(Act on Radio Frequencies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⑤ 아동 포르노그라피 배포 예방조치에 관한 법(Act on the Measures to Prevent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⑥ 텔레비전 및 라디오 운영에 관한 법(Act on Television and Radio Operations)

⑦ 특정 조치 금지에 관한 법(Act on the Prohibition of Certain Measures)

⑧ 보호된 서비스 접근을 위한 특정 불법기기 금지에 관한 법(Act on the Prohibition of Certain Illicit Devices for Accessing Protected Services)

⑨ 특정 라디오 주파수 경매에 관한 법(Act on Auctioning Certain Radio Frequencies)

※ 이러한 핀란드의 기존 법들은 유럽정보보유 지침(European Data Retention Directive)(2006/24/EC), e-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2002/58/EC), 보편서비스 지침(Universal Service Directive)(2002/22/EC), 기본지침(Framework Directive)(2002/21/EC), 승인 지침(Authorisation Directive)(2002/20/EC), 그리고 접근지침(Access Directive)(2002/19/EC)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주요내용

■ **(규제의 지역적 범위 확대)** 통신의 비밀, e-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법의 특정 조항들이 유럽연합 외에서 적용되었더라도 핀란드에서의 통신의 전송을 위한 기기를 유지 · 사용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포섭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다만, 서비스 이용자가 핀란드에 소재하고 있어야하며, 서비스가 명확하게 핀란드 내에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핀란드의 기존 e-프라이버시 규정들의 영토적 적용범위는 핀란드 개인정보법과 유럽연합 "정보보호지침" 95/46/EC와 유사한 논리는 따랐다면, 해외에서의 특정 서비스를 포섭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현재 유럽연합에서 고려하고 있는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접근법과 유사함

■ **(연대책임 적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위법(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mobile payment services)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을 규정한다.

–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판매자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 (service providers), 인터넷 사업자 및 판매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sells)간의 연대책임을 규정한다.

■ **(망 중립성)** 유럽 연합 내에 망 중립성에 관한 규제와 동일선상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특정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도록 한다.

– 네트워크에 대한 제한은 통신서비스 계약을 근거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제한이 온라인상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비합리적으로 막거나 인터넷 트래픽을 느리게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중개인 개념 확대)** 통신을 전송하는 중개인의 개념를 확대하여 e-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을 강화한다.

– 중개인의 정의에 전기통신을 전송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며, 공중통신망 이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 데이터 보안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평가 및 전망

■ 정보사회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핀란드 행정부는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단순히 통합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의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일관된 기본법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유럽 연합 및 국내 차원에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일관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핀란드의 2015년 정보사회법의 이러한 규정들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를 고려했을 때, 데이터 보유 관련 규정에 관한 추가적인 개정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거래비밀과 관련한 오용을 방지하고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가입자가 트래픽 정보를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 법에서의 중개인과 특정 일반데이터보안 관련 의무의 변화에 따라 일반 데이터 보안법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twobirds.com/en/news/articles/2014/finland/information-society-code-2015 등

2. 판례 및 이슈

1 독일 , 민간인의 드론 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요청 (2015.1.30)

개요

■ 독일은 민간인의 드론(Unmanned Aerial Vehicles, UAV)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항공법(Luftverkehrsgesetzes, LuftVG)을 개정하였다(2015. 1. 30).

무인기 관련 독일 항공법(Luftverkehrsgesetzes, LuftVG)의 개정

■ **(허가의무)** 비행이 가능한 5kg 이상 25kg 미만의 무인항공기는 각 주(州)항공청의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5kg 미만의 민간 드론은 무인항공기로 간주하여 항공법에 대해 인지해야 하며 (항공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a호),

– 스포츠나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이용하되 항공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7호)에 따른 허가의무는 없다.

※ 관할 항공청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항공 안전에 위험하지 않고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대한 위협을 주지 않아 데이터보호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비행을 허가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1호).

■ **(자격 요건)** 항공 신청인은 무인항공기 운항에 관한 개인의 적성 및 기술 능력에 관한 정보와 보험 중개인을 통해 가입하고 비행협회를 통해 체결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법 제43조 제2항 1호).

■ **(운행 요건)** 무인기는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만 운행되어야 하며, 비행체가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행이 (규칙 제15조a 제3항 2호)제한 된다.

– 비행영역은 최소거리 1.5km를 유지해야 하고 산업단지, 사고지역, 재난지역 등(규칙 제6조 제4항 2호)에서의 비행은 금지되며 특정지역의 상공 통과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6조 제4항 2호).

전망

- 현재 스웨덴, 프랑스, 영국 같은 EU 회원국에서 민간인의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회원국의 국내 규정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중요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 EU 차원의 엄격한 규정으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보장, 책임 보험, 연구·개발 및 촉진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4월 8일 민간인의 드론 이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바 있으며,

– EU의 관련 산업계는 국제 시장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도 함께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참고자료

http://www.tlfdi.de/imperia/md/content/datenschutz/veroeffentlichungen/pmtlfdi/pm_drohne1.pdf

http://www.tlz.de/web/zgt/leben/detail/-/specific/Drohnen-Wenn-Herr-X-seine-Nachbarin-filmt-1199505123

https://netzpolitik.org/2015/polizei-und-justiz-in-bund-und-laendern-ueberlegen-abwehrmassnahmen-gegen-privat-genutzte-drohne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84_de.htm

2 EU데이터보호작업반, 조세 부과 목적으로 국가간 개인정보 교환에 대한 설명서 발간(20105.2.4)

개요

■ EU 데이터보호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 (WP29))[1]은 조세 부과 목적으로 국가 사이에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것에 관하여 입장을 발표하였다(2015.2.4.).[2]

배경 및 목적

■ **(배경)** EU 데이터보호작업반은 조세행정공조에 관한 지침 2011/16/EU[3] 및 OECD의 국가간 금융계좌정보의 자동교환에 관한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에 규정대로 이행될 양자 협약, 다자 협약 및 국내 법률 내에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의 교환에 따른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회원국의 조세 당국에게 제공해 줄 것을 EU집행위원회로부터 요구받아 왔다.

–이러한 요구로 EU 데이터보호작업반으로 대표되는 EU의 개인정보보호청은 조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국가 간에 자동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유럽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이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 **(목적)** 주로 조세부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는 회원국 정부와 EU 기구를 대상으로 양자 협약, 다자 협약 및 EU 및 회원국의 법률이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고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서를 발표하였다.

1 EU 데이터보호작업반은 지침 95/46/EC 제29조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EU의 독립 자문 기관이다. 이 작업반은 이 지침의 제30조와 지침 2002/58/EC에 규정되어 있다.

2 Statement of the WP29 on automatic inter-state exchanges of personal data for tax purposes, 14/EN WP 230.

3 지침 2014/107/EU에 의해서 현재 수정됨

–조세 정보의 교환은 탈세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하고 공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 준수되도록 확보할 필요가 있다. 탈세 방지는 일반적인 공익의 목적이고 동시에 모든 시민의 사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해당한다. 회원국은 개인의 기본권을 완전하게 존중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EU 및 국제적인 법적 수단에 의해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사생활의 권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가 존중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보고서

■ 최근 몇 년 동안 작업반은 조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국가 사이에 자동으로 교환하는 메카니즘과 이것이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왔다.

–EU 데이터보호작업반은 2012년 6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서면으로 EU집행위원회에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이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의 전송을 위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였다.

■ 2014년 7월 15일 OECD 위원회에서 승인한 '금융계좌정보의 자동교환에 관한 기준 – 공통 보고 기준(CRS)'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뢰서를 통해 처음으로 평가하였다 (2014. 9. 18).

주요내용

■ **(목적의 정당성)** 과세부과 목적의 개인정보의 자동 교환은 목적의 정당성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 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공동의 표준기준의 도입은 정부와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전달 비용을 낮추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EU의 광범위한 반 탈세 정책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 기본적 권리들을 준수하면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 수많은 개인들과 관련되는 개인 정보의 자동 교환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데이터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피해의 최소성)** 통신정보의 보관에 관한 2014년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4]에 따라서 사전에 예정된 절차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있고, 요구된 데이터는 필요 최소에 그쳐 무분별한 대규모의 정보 수집과 전달을 피해야 한다.

통신정보보관지침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ECJ, 8.4.2014, C-293/12, C-594/12.)

- EU의 통신정보보관지침(2006/24/EC)은 회원국에게 통신내용을 제외한 유무선 통신사실내역, 인터넷 접속 정보(방문사이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무선통신기기의 카드번호, 휴대전화의 위치에 관한 정보 등을 최소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저장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침은 2014년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판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EU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동 교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간의 협약은 명확하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유효하게 이용되는 목적을 확정해야 한다. 적정한 안전조치 및 법적 근거 없이 다른 목적으로 계속해서 전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세 목적'이란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국내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문제점)** EU회원국은 자동으로 대규모로 정보를 저장하여 전달할 경우 데이터 전달하는 회원국은 보안상의 취약하며, EU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즉, 자발적인 조세 목적의 데이터 교환과 비교하여 자동적으로 의무적인 대규모 조세 데이터의 교환은 공공 기관의 정보보안 책임이 가중하며 보안상의 위험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 각 회원국은 국내 법률, 양자 및 다자 협약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수행하면서 이행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데이터주체에 관한 데이터 책임자로서 기본적 의무이다.

■ 데이터 보호 안전조치를 위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한다. 작업반은 조세 분야에 있어서 행정공조에 관한 지침과 CRS를 이행하는 양자 및 다자 협약 또는 국내 법률이 데이터 보호 수준에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하도록 집행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아 왔다.

– 국내 법률 차원에서 제도 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법적 체계의 효용성을 조사하고 현재의

4 ECJ, 8.4.2014, C-293/12, C-594/12.

'정보보호격차' 또는 주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국내의 데이터 보호 관청을 통하여 관할 관청에 설문지를 발송함으로써 조사 한다.

- EU 차원에서 통일적인 개인정보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PIA)[5]의 접근법 또는 EU집행위원회로부터 권고를 획득할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 이미 2014년 9월 18일 채택된 CRS에 관한 후자의 원칙들을 통해 양자, 다자 협약 및 국제 기준, 유럽의 기준을 이행하는 국내 법률을 수용함으로써 정부가 준수해야할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 지침 2011/16/EU의 개정 과정에서 상이한 입법이유 및 조항들에서 수 많은 실질적인 데이터 보호 규정들을 늘리려고 했던 집행위원회와 이사회의 노력으로 지침 2014/107/EU의 채택되었다.

전망

- EU데이터보호 작업반은 이번 설명서를 통해 EU 기관들과 건설적인 대화가 지속될 것이고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행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본다. 특히 회원국의 조세부과 당국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을 제한하고 EU 내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보다 지속적인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EU차원에서 지속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위원회와 논의하여 공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15/wp230_en.pdf

5 개인정보영향평가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 · 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 · 분석 · 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3 미 백악관, 무인항공기 사용 관련 각서 발표 (2015.2.15)

개요

■ 미국 백악관은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System)의 가정용 사용에 있어서의 사생활, 시민권 및 시민의 자유 보호에 관한 대통령 각서"(Promoting Economic Competitiveness While Safeguarding Privacy,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in Domestic Use of Unmanned Aircraft Systems)를 발표하였다.

–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과 관련한 사생활보호의 자발적 기준을 수립하고 무인항공기의 연방정부의 사용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배경 및 경과

■ 미국 연방항공국(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특정 소형 무인항공기의 사용에 관해 제안한 규정 프레임워크와 관련이 있는 이번 대통령 각서는 무인항공기의 정부 및 민간인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장 최근의 제안내용이다.

– Jay Rockefeller 상원의원(민주당, 웨스트 버지니아)은 무인항공기 작동자에 의한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하는 「무인항공기시스템 사생활보호법안(2014)」(「Unmanned Aircraft Systems Privacy Act of 2014」)를 제안한 바 있다 (2014.12).

– 지난 2년 간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인디아나, 루이지아나, 노스 캐롤라이나, 오레곤, 테네시, 텍사스 및 위스콘신 주 등 많은 주(州)에서 무인항공기의 상업 및 사적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생활보호법을 제정했으며, 경찰의 무인항공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킨 주도 상당수에 이른다.

주요내용

■ **(사생활 보호 기준의 확립)**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통신정보관리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상업적

무인항공기와 관련한 사생활보호 기준 확립을 위하여 사적 부문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이끌 것을 지시하고 있다(제2조).

– 이로써 사생활보호 기준이 확립이 되면 관련 산업에 의한 동 기준의 채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정책 확립)** 연방 기관으로 하여금 사생활 보호, 시민권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르고 제정해야 하는 정책들을 열거하고 있다.

– 연방 기관들이 반드시 따르고 제정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무인항공기의 사용에 의한 정보의 수집, 정보의 사용, 정보보유 및 배포의 제한(제1조(a)), 인종, 성별, 출신국적 등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시민권 보호(제1조(b)), 신뢰성 및 투명성 보장(제1조(c) 및 (d)) 등이 있다.

– 특히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각서에서는 각 연방 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무인항공기 기술 배치 이전에 자 기관의 무인항공기 관련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고 최소 3년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가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제1조(a)).

– 1974 연방 사생활보호법(the Federal Privacy Act of 197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 기관에 대한 기존의 의무를 상기하고 있으며(제1조),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를 포함하여 기록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배포를 제한하고 각 개인에게 자신의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특히 강조를 하고 있다.

평가

■ 무인항공기가 기간시설의 관리, 농업, 재난대응 등 다양한 상업적 및 사적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오늘날, 이의 적절한 사용은 경제적 경쟁력의 제고에 매우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 내 정치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며 이러한 생각이 대통령 각서로 더욱 부각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hldataprotection.com/2015/02/articles/consumer-privacy/white-house-releases-memorandum-on-unmanned-aircraft-systems/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2/15/presidential-memorandum-promoting-economic-competitiveness-while-safegua

http://ehoganlovells.com/cv/0516da5f2f7b77d733cec728b4bd9b9c31fc917b

http://www.insidegnss.com/node/4413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5/02/articles/white-house-sets-privacy-expectations-federal-governments-use-unmanned-aircraft-systems/

4 국외 주요 국가(미국 · 영국 · 호주 · 일본 ·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동향

개요

■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정됨에 따라 주요국에 클라우드컴퓨팅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미국

■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거버넌스 체계)**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미국 연방정부의 체계는 연방 CIO위원회(Federal CIO Council)를 중심으로 7개 조직으로 구성

– (연방CIO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거버넌스 총괄기관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담당

– (클라우드컴퓨팅실행조정위원회) 세부 추진 계획 및 사업 방향성을 제시

– (클라우드컴퓨팅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의 현황과 이슈사항,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방안 자문 등을 제공

– (연방조달청) 연방CIO위원회의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실행될 수 있도록 총괄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연방정부 전체에 적용되는 조달 기준을 수립 · 반영

– (예산관리실) 정책 및 예산 지원

– (국토안보부) 보안 관련 정책 및 모니터링 지원

–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표준 개발 선도 및 보급 지원을 담당

미국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거버넌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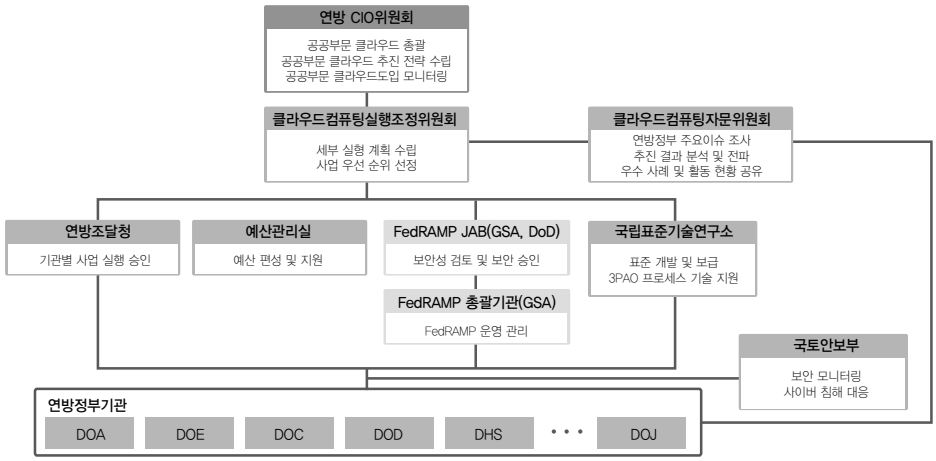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정책

■ 미국 정부는 IT 관리 계획을 위한 25개 실행계획 중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략의 하나인 '클라우드 우선 정책(Cloud First Policy)'을 구체화한 '연방 클라우드컴퓨팅 전략(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 제시('10. 12).

– 이러한 전략을 기초로 예산관리국(OMB)은 각 연방 기관이 3개 이상의 서비스를 2012년 6월까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전환 · 구축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미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확산에 결정적 역할 수행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정책

구 분	내 용
25개 실행계획	• 연방정부 기관의 IT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IT프로그램 관리 개선과 운용 효율화 촉진을 목적으로 실행계획을 제시함 • 25개 실행 계획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분야는 800개 데이터센터 통합 계획, 클라우드 관련 마켓플레이스 구축, Cloud Fisrt 정책 이행 등이 있음
클라우드 우선 정책	• 연간 800억 달러의 IT 예산 중 25%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전환을 목표로 공공부문 IT 자원 도입 시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
연방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전환, 결정, 관리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

출처 :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정책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 미국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공공(Public), 사설(Private), 커뮤니티(community)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보안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

■ 연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공공서비스는 대국민 웹 페이지, E-Mail, 고객관리 서비스 등 비교적 단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로 인해 ICT 유지비용 절감

■ GSA는 정부부처 및 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Apps.gov 오픈

– Apps.gov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과 보안, 운영관리를 조달청(GSA)에서 수행하며 클라우드컴퓨팅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기관들은 Apps.gov를 이용해 각각의 수요와 니즈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선택 가능함에 따라, 정부기관들은 자체적인 발주 절차를 실행할 필요가 없으며, 우수한 클라우드컴퓨팅 공급업체에 투자 등 이용이 가능해짐

미국 Apps.gov의 주요 제공 서비스

구 분	내 용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기업 수준의 솔루션으로 분석도구, CRM,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관련 애플리케이션
생산성 애플리케이션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워드 프로세싱, 협력, 프로젝트 관리 등의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컴퓨팅 IT 서비스	스토리지, 웹호스팅, 가상머신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IT 서비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정부가 효과적으로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 Apps.gov 운영 초기에는 세일즈포스닷컴, 구글, AWS, VMWare 등 3,000종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2011년 보고에 따르면 단지 5백만 불 수준의 판매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상태임

– 이에 따라, GSA는 2012년 12월 Apps.gov를 닫고 GSA Advantage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GSA Advantage : 199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카달로그 형식의 마켓 플레이스이며, GSA가 구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소개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기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을 구축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연방 데이터센터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컴퓨팅을 구축하였으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고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43개 데이터센터를 2개 데이터센터로 통합

– GSA에서는 '09. 4 클라우드컴퓨팅 PMO 제도를 신설하여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육성을 지원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사업의 설계 및 운영 지원, 정보 공개 및 보급, 계획 및 전략지원, 프로젝트 추진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공통서비스(Shared Service) 전환 정책

■ 미국 내 공공서비스의 공통서비스(Shared Service) 전환정책은 서비스 복잡도에 따라 3단계 접근 방식을 마련하여 추진

– 공통서비스는 기관 간 연계성이 적고, 클라우드컴퓨팅 적용이 쉬운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들 중심으로 우선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공통서비스(Shared Service) 전환 3단계 접근 방식

구 분	주요 내용	서비스 로드맵
1단계 (Crawl)	부서 등 최소 단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Commodity 서비스 중심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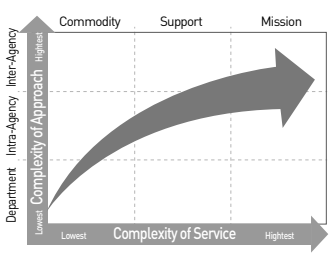
2단계 (Walk)	부처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Support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	
3단계 (Run)	부처간 연계되는 Mission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	

자료 :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Shared Service Strategy, CIO Counsil, 2012.02

■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비스 카탈로그(Uncle Sam's List)를 만들어 이용기관의 이용 편의성 향상

– 이용기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손쉬운 접근 및 상세 안내를 통해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

Ⅱ. 영국

클라우드컴퓨팅 거버넌스

■ 영국의 미래 전략인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의지 표명

– 총리실에 디지털 통합국(Director of Digital Engagement)을 신설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정부 ICT를 총괄

■ 내각부의 CIO 협의회와 ICT 업계 연합체인 인텔렉트(Intellect)가 상호 협력적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확산 정책 추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정책

■ 영국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유 환경 속에서 ICT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략인 'G-Cloud' 추진

■ 또한 '정부 클라우드 전략(Government Cloud Strategy)' 공표를 통해 'G-Cloud' 전략 구체화('11. 3)

– 공통 업무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화(SaaS), 인프라 통합 구매, 공공 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통합, 정부 대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판매 시장 구축 등을 통한 비용절감에 중점

영국 G-Cloud 서비스 관리 프레임워크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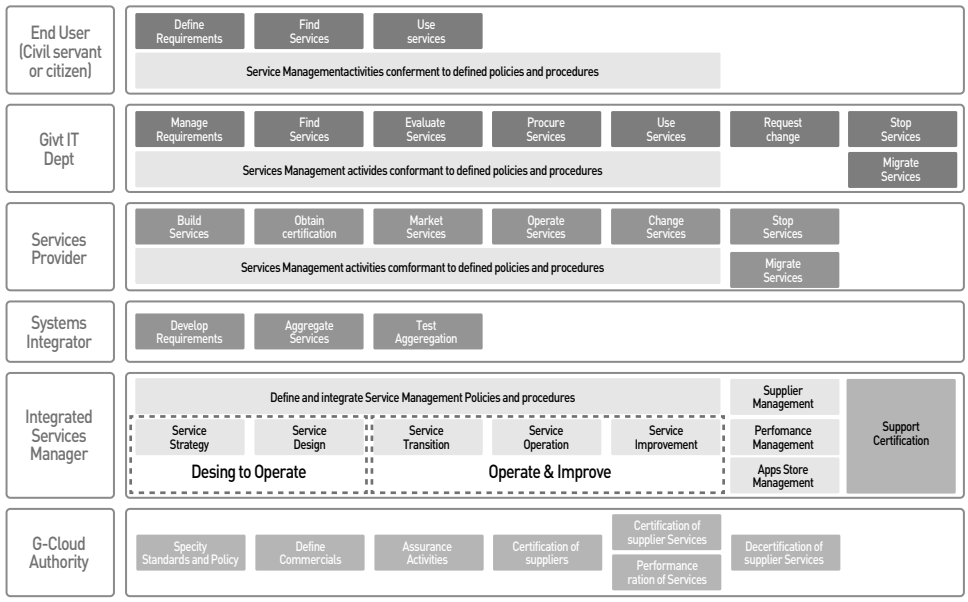

■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 ICT 관련 비용 절감, 유연한 애플리케이션 확장 등을 목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정부 인프라 구현

■ 영국 정부는 'G-Cloud' 서비스를 위한 원스톱 쇼핑몰인 '클라우드 스토어(Cloud Store)' 개설('12. 2)

– '클라우드 스토어'는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지원책 중 하나로, 각 부처가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제품군을 카탈로그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임

– 클라우드 스토어에서 지원 가능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유형은 프라이빗, 퍼블릿,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며, 제공 서비스로는 IaaS, PaaS, SaaS, SCS(Special Cloud Service)임

※ SCS(Special Cloud Service)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클라우드컴퓨팅 전략 및 구현 서비스, 서비스 통합 및 관리서비스 등이 있음

– '13년 8월 기준으로 800개의 공급자로부터 약 7,000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은 공급자와 직접 계약과 주문에 의해 이루어짐

Ⅲ. 일본

클라우드 거버넌스 체계

■ 일본은 총무성을 중심으로 민간산업 분야 활성화와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총무성)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및 거버넌스 총괄 및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략 수립

– (경제산업성)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 (일본 클라우드 컨소시엄) 민간 분야 클라우드컴퓨팅 과제 도출 및 로드맵 개발 및 분야별 시범 서비스 지원

– (자치체 클라우드 추진 본부) 자치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관리 및 확산을 위해 표준사항과 지침을 제공하고 자치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결과 검증

– (지방자치정보센터) 자치체 클라우드컴퓨팅 표준 개발을 지원하고 자치체 정보 수집을 통한 요구사항 조사와 자치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모니터링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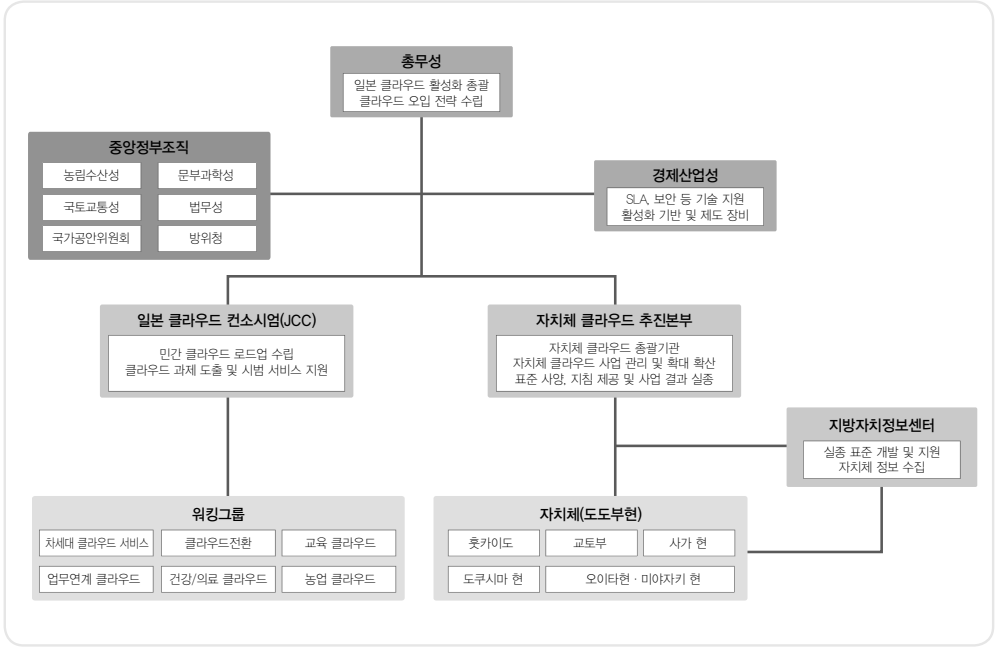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정책

■ 일본 정부는 보이는 행정 서비스, 국민에게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쓸데없는 것을 배제하는 행정 쇄신을 통하여 전자행정 클라우드컴퓨팅을 추진

■ 총무성은 2015년을 목표로 중앙부처 대상의 "카스미가세키 프로젝트"와 자치체 대상의 "지자체 클라우드" 정책 추진 중

– 카스미가세키 프로젝트는 정부의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며, 정부 정보시스템의 통합 · 집약화 및 각 정보 시스템의 보유 데이터를 연계하여 2015년까지 디지털기술에 의한 새로운 행정개혁 추진

– 자치체 클라우드은 2009년 7월에 총무성이 "자치체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개발실증단체"를 모집하여 홋카이도 등 5개 단체가 채택되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10.10 자치체 클라우드 컴퓨팅 추진본부가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

■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함께 민 · 관 · 학 협의회인 일본클라우드컨소시엄(JCC)을 설립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급 및 발전과 해결책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50여개와 250여개 민간 기업이 참여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연구작업반을 구성 · 운영 중임

– JCC의 워킹그룹들은 교육, 농업, 건강 및 의료, 차세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인 총무성은 분야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확대를 위해 해당 공공기관과의 협력 추진 지원

– 또한, 교육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인 "퓨처스쿨(Future School)"을 수행하기 위해 문부과학성과 연계 · 협력하여 추진 중

Ⅳ. 호주

클라우드컴퓨팅 거버넌스 체계

■ 호주는 정보관리청에서 총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인프라를 조성한 후에 범정부적 통합을 계획하고 있음

– (CCMC) 위원회는 특정 커뮤니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성 결정, 진행과 활동에 대한 감독, 기관 참여자들의 확대 이슈와 정책 확립을 위해 설립

– (Lead Agency) 커뮤니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참여사들의 협력 관리, CCSP와 관계되는 계약사항 보고 관리, CCSP와 참여사들 간의 이슈에 대한 단계적 확대 등에 대한 리더쉽 역할 제공 및 책임을 지님

– (Participating Agencies) CCSP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들과 CCSP와 직접적으로 상호협력하는 기관들을 의미

– (CCSP) 커뮤니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업적 제3기관(third party)이 될 수 있고, CCSP서비스가 기관에 의해 제공될 경우 LA(Lead Agency) 역할을 공유할 수 있음

호주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거버넌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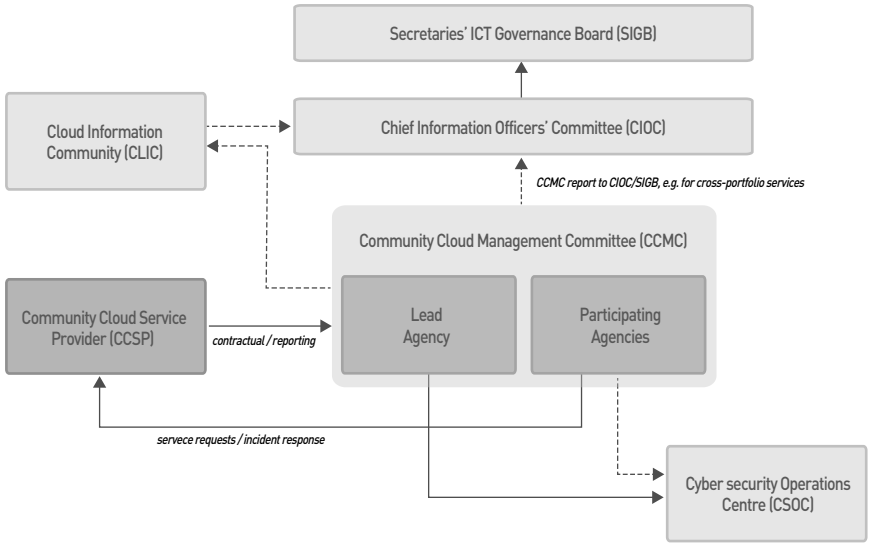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정책

■ 호주 클라우드컴퓨팅 전략은 비용 절감, 보안성, 유연성, 운영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을 구축

– 독자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기반 구축은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아마존, 델, IBM,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적용에 관심

■ 정부기관들이 재무규제완화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에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의 전환 의사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동 접근 시도

■ 호주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현황은 전략에 따라 '11 상반기부터 Stream1을 시작으로 Stream2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Stream3로 퍼블릭 클라우드컴퓨팅을 진행하면서 프라이빗과 커뮤니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호주 정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정책

구 분	도입 정책	수행 결과(예정)
Enabling (Stream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로 정책, 원칙, 계약지침을 수립	• CLIC(Cloud Information Community) 설립 – 클라우드컴퓨팅 프레임워크 개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개념 –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클라우드컴퓨팅 최적 수행 지침서
Public Cloud (Stream2)	공공부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 AGIMO 공공 웹사이트의 public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전환 및 테스트 수행 – 부서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개념 · 지침 증명
Private andCommunity Cloud (Stream3)	데이터 센터 전략을 동반한 전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 Data Center(미래 클라우드컴퓨팅 가용성을 받쳐줄 수 있는 프로젝트 부분)전략과 통합 • Private 및 Community 클라우드컴퓨팅 조사 및 도입 정부 storefront 또는 정부 Community 클라우드컴퓨팅 조사 및 설립 예정

자료 : Austrailian government Government Cloud Computing Policy, AGIMO, 2013. 07

Ⅴ. 중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정책

■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 클라우드컴퓨팅 핵심기술 개발, 핵심기업 육성, 전통산업과의 융합 및 국민 편의 서비스 제공('12. 9, 12차 5개年 과학기술 발전계획)

– 상하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단지('15年까지 300개 이상 기업 유치)와 랑팡 경제특구에 대규모 클라우드컴퓨팅 단지 조성 추진('11. 6월)

■ SW와 ICT 산업의 기업 소득세 정책 발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SW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업의 판매세 및 소득세를 낮출 계획이라서 시장 진출 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신장에 클라우드컴퓨팅 센터 운영을 시작,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진출을 위한 지역 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여겨지고 있음

– 이 지역에 거의 300억 위안(49억 달러)의 거액을 투자해 왔는데, 앞으로 10년간 신장에서는 이 전산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연간 320억 위안 규모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

참고 웹사이트

1 국내 웹사이트

[1] 국회 (http://www.assembly.go.kr)

2 국외 웹사이트

[1]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15/wp230_en.pdf

[2] http://www.tlfdi.de/imperia/md/content/datenschutz/veroeffentlichungen/pmtlfdi/pm_drohne1.pdf

[3] http://www.tlz.de/web/zgt/leben/detail/-/specific/Drohnen-Wenn-Herr-X-seine-Nachbarin-filmt-1199505123

[4] https://netzpolitik.org/2015/polizei-und-justiz-in-bund-und-laendern-ueberlegen-abwehrmassnahmen-gegen-privat-genutzte-drohnen/

[5]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84_de.htm

[6] http://www.twobirds.com/en/news/articles/2014/finland/information-society-code-2015

[7] http://lexia.fi/2014/12/22/finnish-information-society-code-enters-into-force-2015/

[8] http://www.castren.fi/Page/c1ccbac8-1bad-436e-bb79-e1ffaa00df14.aspx?groupId=a0231459-d54f-4ff6-8057-034a2b359a33&announcementId=978b9a1c-e666-4a95-8eca-a81c698a24f3

[9] http://www.zdnet.com/article/finland-gets-tough-on-privacy-with-new-law-to-give-apple-facebook-messages-total-security/

[10] http://www.roschier.com/archive/1447

[11] http://www.mondaq.com/canada/x/374172/Data+Protection+Privacy/Bill+C51+and+the+Sharing+of+Personal+Information

[12] http://www.parl.gc.ca/LegisInfo/BillDetails.aspx?Language=E&Mode=1&billId=6842344

[13] http://www.parl.gc.ca/HousePublications/Publication.aspx?Language=E&Mode=1&DocId=6932136&File=32#1

[14] http://www.macleans.ca/news/canada/anti-terrorism-act/

[15] https://www.priv.gc.ca/media/nr-c/2015/s-d_150130_e.asp

[16] http://www.hldataprotection.com/2015/02/articles/consumer-privacy/white-house-releases-memorandum-on-unmanned-aircraft-systems/

[17]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2/15/presidential-memorandum-

promoting-economic-competitiveness-while-safegua

[18] http://ehoganlovells.com/cv/0516da5f2f7b77d733cec728b4bd9b9c31fc917b

[19] http://www.insidegnss.com/node/4413

[20]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5/02/articles/white-house-sets-privacy-expectations-federal-governments-use-unmanned-aircraft-systems/